

우에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라. 이 조례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승인등을 득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15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도 증가 후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다만, 별표 1 제1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가목 도시의 개발란 (10)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30퍼센트 이상이거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도 증가 후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로 한다.

별표 2 제3호 사회·경제환경분야중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문화재 또는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유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계약체결에 관한 적용례)제6조제3항·제7조제2항·제8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작성계획서, 평가서초안 또는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는 별표 1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법률 제6916호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분야별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적용례)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중 왕릉·고분묘인 경우에는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536
------	-----

2004년 9월 . 6일  
교육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4년 8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51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2004.9.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교육정책국장 박헌화)

가. 개정이유